

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오영탁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-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도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명예도민으로 예우하고 있는바, 수여대상과 예우를 명확히 하여 충청북도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을 “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”에서 “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”로 함.
- 도 위상 제고, 도민 생활개선 및 국제교류 공로 등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을 규정함(안 제2조).
-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 추천 및 결정 절차를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- 도 주최 행사 초청, 주차요금·입장료 면제 등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6조).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명예도민증서 수여 받아 명예도민으로 예우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고,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과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를 분명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- 본 조례는 2002. 5. 31. 전부개정을 통해 충청북도정과 충청북도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도록 정했고, 지난 2024년까지 총 549명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해 왔음.

【참고】 연도별 수여 현황

(단위: 명)

총 549	‘11년 이전	‘12년	‘13년	‘14년	‘15년	‘16년	‘17년
	213	13	15	26	23	25	16
	‘18년	‘19년	‘20년	‘21년	‘22년	‘23년	‘24년
	13	77	12	47	26	26	17

- 본 조례안은 제명을 “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”에서 “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”로 정하였는바, 현행 조례가 명예도민증서 수여 절차를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 규정한 것에 비해, 본 조례안 명예도민증서 수여에 따른 명예도민 예우에 방점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1조는 조례 규정 목적을 간결하게 규정함.
 - 안 제2조는 수여 대상과 관련하여 “외국, 해외교포, 타시도 인사” 등 불필요한 열거를 삭제하였음.
 - 안 제3조는 수여 대상자 추천 권한이 있는 사람을 ▲도의 실장, 국장, 본부장, ▲소속기관의 장, ▲충청북도의회의장, ▲시장, 군수로 함.
 - 안 제4조는 명예도민증서 수여 결과의 충청북도의회 보고에 관한 현행 제4조제2항을 안 제5조(명예도민증서 수여)로 이동함.

- 안 제5조는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에게 반드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도록 정하였고, 명예도민증서 수여 결과를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하였음.
 - 안 제6조는 명예도민증서 수여 내역을 수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, 대상자 추천, 대상자 결정, 명예도민증서 수여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도록 정하였음.
 - 안 제7조는 명예도민에 대한 기존 불분명한 대우에 관한 규정을 「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」 등 충청북도 조례에서 명예도민에게 보장하는 예우를 명문화하였음.
 - 안 제8조는 명예도민증서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명예도민에 대한 명예도민증서 수여 취소와 관련하여, 기존 충청북도의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였던 것을, 대상자 결정 절차와 합치하도록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조례 규정의 취지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, 명예도민증서 수여 절차 및 예우 등 조례 규정 전반을 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현행 조례에 따르면 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“대우” 요소가 ▲각종 행사 초청, ▲도 소식지 제공, ▲초청강사 활용, ▲공적 홍보 등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,
 - 본 조례안의 “예우”도 ▲충청북도청사 주차요금 면제, ▲청남대 입장료 면제, ▲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등에 그치고 있어,
 - 향후 명예도민의 자긍심 고취, 명예도민 위촉에 따른 충청북도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사항을 발굴하여 적용하려는 소관부서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.